

모금과 구호

1994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인사말씀



우리는 매년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상초유의 냉해로 쌀 수확이 감소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당한바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적립되어 있는 국민의 정성어린 의연금 262억원을 긴급히 배정하여 이재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에 크게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크고 작은 재난이 닥칠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해 왔으며 동포애와 환난상휼의 오랜 전통은 지금도 연면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실의에 잠긴 이재민에게 우리 모두의 정성을 모아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져 하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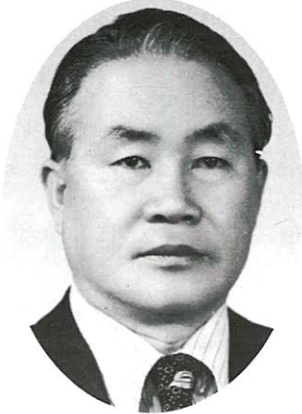
1994년 5월

전국재해대책협의회
회장 최 종 료

역 대 회 장



초대 회장
俞 鎭 牛
(前)高麗大學校 總長



2대 및 6대 회장
柳 達 永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3대 회장
李 寬 求
(前)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5대 회장
高 在 旭
(前)東亞日報社 會長



4대 회장
林 炳 稷
初代 外務部長官



7대 회장
柳 建 浩
(前)朝鮮日報社 代表理事



8대 회장
崔 鐘 律
京鄉新聞社 社長

재해의연금 사용공고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난해에도 7~8월에 발생한 태풍과 집중 호우로 막대한 재산 손실을 당한 바 있으며

특히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사상초유의 냉해로 쌀수확이 크게 감소되는 등 재난이 많은 한해 였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적립되어 있는 의연금을 긴급히 이재민에게 지원하여 조기생활안정에 기여한 바 있으며,

의연금의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의연금 사용내역

가. 태풍피해 구호비	:	11억 6,962만원
나. 집중호우 및 폭풍 피해구호비	:	33억 2,981만원
다. 우박피해구호비	:	25억 635만원
라. 냉해피해 구호비	:	179억 1,723만원
마. 해상선박 및 각종 재난피해 구호비	:	12억 4,625만원
합	계	: 262억원

2. 의연물품 사용내역

모포 1,000매 재해지구에 전달

3. 현재 적립되어 있는 의연금 85억원

4. 비축중인 물품, 모포 가스버너 및 각종 생활용품외 4만점

1994년 5월

전국재해대책협의회

회장 최종률

會 員 名 單

(가나다順)

職 位	性 名	所 屬 機 關	電 話
顧 問	柳 達 永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786-1754
"	黃 溫 順	徽慶學園 理事長	244-2304
名譽會長	柳 建 浩	(前)朝鮮日報社 代表理事	542-5503
會 長	崔 鐘 律	京鄉新聞社 社長	730-5151
副 會 長	李 燾 淑	韓國女性團體協議會 會長	793-5196
"	李 鍾 旼	大田文化放送 社長	(042) 222-3000
理 事	盧 永 台	韓國放送協會 常任理事兼事務處長	735-7117
"	朴 淑 鉉	韓國社會福祉協議會 會長	712-2339
"	孫 宣 奎	韓國新聞協會 事務局長	733-2251
"	李 炳 雄	大韓赤十字社 事務總長	755-9301
"	李 尙 根	韓國新聞編輯人協會 事務局長	732-1726
"	張 在 國	한국일보社 會長	724-2114
"	崔 鍾 賢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	780-0821
"	洪 斗 杓	韓國放送公社 社長	781-1000
"	洪 錫 炫	中央日報社 社長	751-5114
監 事	張 大 煥	每日經濟新聞社 社長	276-0201
"	朴 龍 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事務總長	576-5892
常任理事	金 圭 炫	全國災害對策協議會 事務局長	715-4139
會 員	姜 大 榛	全國劇場聯合會 會長	735-3382
"	姜 汶 奎	大韓YMCA聯盟 事務總長	754-7891

職 位	性 名	所 屬 機 關	電 話
會 員	姜 成 求	(株)文化放送 社長	784-2000
"	具 平 會	韓國貿易協會 會長	551-5114
"	金 東 圭	大韓住宅公社 社長	513-3114
"	金 炳 琯	東亞日報社 會長	361-0114
"	金 相 廈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316-3502
"	金 容 完	大韓家族計劃協會 會長	634-8211
"	金 雲 龍	大韓體育會 會長	420-3333
"	金 鐘 星	大韓製粉工業協會 會長	753-1659
"	金 炯 駟	大韓穀物協會 會長	583-2111
"	朴 尙 奎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785-0010
"	朴 香 星	大韓佛教曹溪宗總務院 院長	739-5590
"	方 相 勳	朝鮮日報社 社長	724-5114
"	卞 柱 仙	한국걸스카우트연맹 總裁	733-4347
"	承 炳 九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事務總長	782-1867
"	申 榮 均	韓國藝術文化團體總聯合會 會長	744-7872
"	元 喆 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397-5114
"	李 罕 洙	서울신문社 社長	735-7711
"	李 方 鎬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240-3114
"	李 允 鍾	林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416-9416
"	朱 善 愛	大韓YWCA聯合會 會長	774-9702
"	池 三 峰	서울특별시醫師會 會長	676-9751

설립 목적 및 연혁

1. 目的

不時로 發生하는 災害의 復舊와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國民義捐金品の 募集과 관리 및 配分을 통하여 隣保相助의 동포애를 바탕으로 福祉社會의 기틀을 마련코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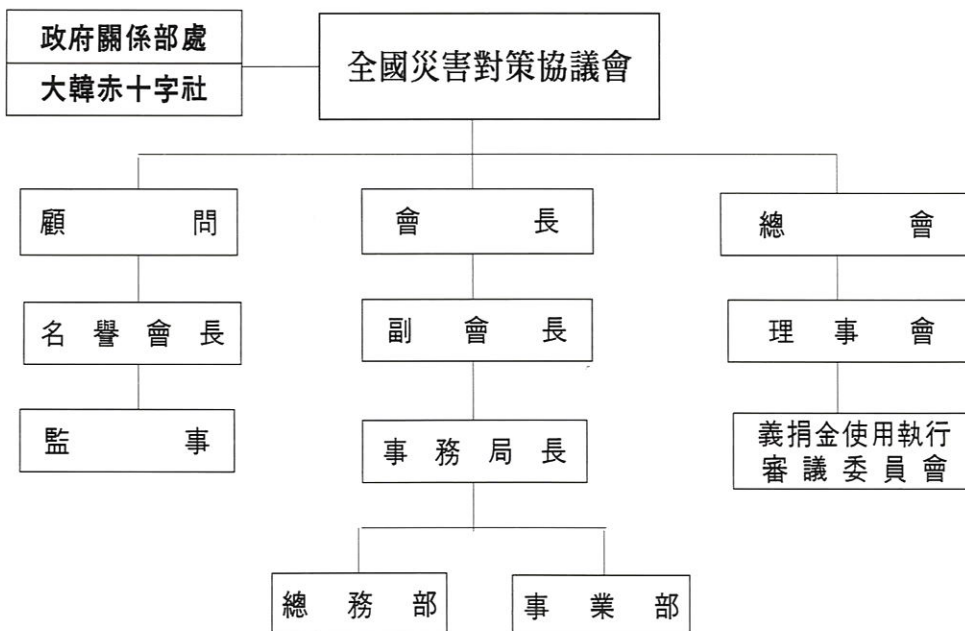
2. 沿革

- (1) 1961년 7월13일 全國水害對策委員會 組織
- (2) 1961년10월26일 全國災害對策委員會 創立總會
- (3) 1964년 9월 3일 保健社會部에 社會團體 登錄
- (4) 1964년10월31일 全國災害對策協議會로 改稱
- (5) 1968년10월15일 社團法人으로 改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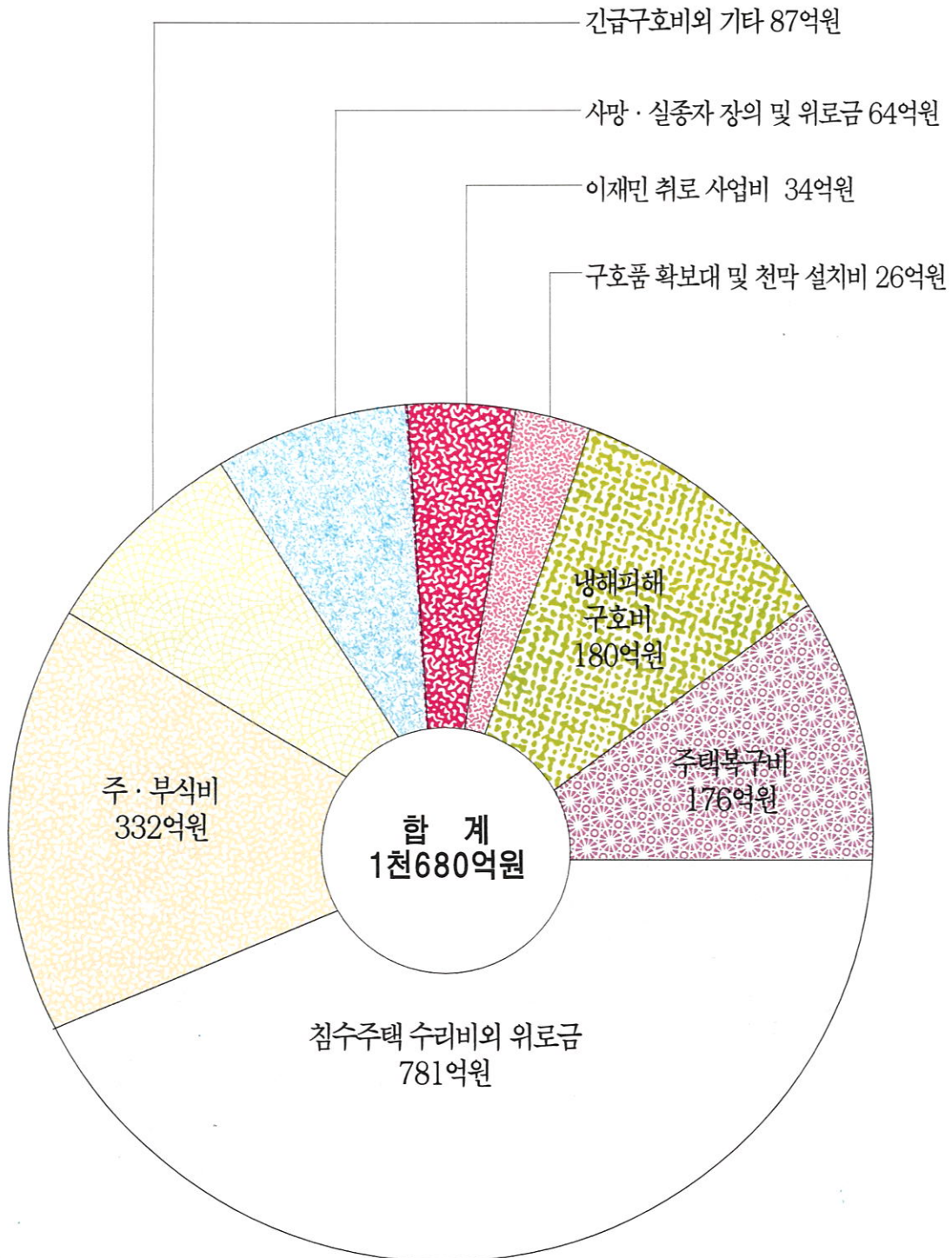
3. 事業

- (1) 災害復舊 및 救護를 위한 國民義捐金品 募集事業
- (2) 前號事業에 대한 企劃, 統制, 調查研究 및 弘報事業
- (3) 災害이재민 救護事業
- (4) 其他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事業

4. 機構表



80년 이후 도표로 본 재해 구호 현황





❖ 94.3.28일 제54차 이사회를 프레스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94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등을 심의하였다.❖





❖ 94.2.8~2.12일중 발생한 폭설로 전국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본회에서는 10억원을 이재민 구호비로 긴급히 지원하였다. ❖





❖ 93.10.10일 군산 앞바다 위도에서 침몰된 서해훼리호 희생자 유가족이 모여 열하고 있으며 본회에서는 11억원을 위로금으로 지원하였다.❖





❖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시가지에서 긴급히 주민을 구출하고 있다.❖





▲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물바다로 변해버린 기옥과 논경지



▲ 93년도에 발생된 극심한 냉해로 큰피해를 당하였으며 본협의회에서는 냉해피해 구호비로 200억원을 긴급히 지원하였다.



❖ 국민의 성금이 포함되어 건립된 수해복구주택 ❖





❖각계각층으로부터 기탁되어 오는 의연물품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재해지역에 긴급 배정하였다.❖





❖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로 부터 기탁된 의약품을 재해지역 이재민에게 긴급히 전달하였다.❖



80년 이후 재해피해 현황

종목 년도	사 망 (인)	이재민 (인)	침수면적 (정보)	건 물 (천원)	선 박 (천원)	농 경 지 (천원)	공공시설및기타 (천원)	합 계 (천원)
1980	279	53,860	115,762	10,547,623	6,749,067	120,963,592	154,063,695	292,323,977
1981	216	18,306	149,583	3,963,539	2,627,073	33,267,213	109,159,900	149,017,725
1982	121	6,609	37,007	935,174	1,168,090	36,836,139	56,298,882	95,238,285
1983	91	1,348	25,061	2,408,976	1,181,217	11,676,244	7,321,537	22,587,974
1984	265	364,470	140,036	10,246,910	757,008	96,972,508	180,236,502	288,212,928
1985	249	72,156	126,178	1,373,422	6,076,255	83,578,564	65,949,448	156,977,689
1986	155	99,036	87,855	2,239,146	2,773,076	202,889,852	64,344,297	272,246,371
1987	1,071	272,851	299,466	15,948,730	22,407,573	340,647,973	849,631,104	1,228,635,380
1988	143	5,066	17,470	664,497	1,681,176	27,291,548	108,202,338	137,839,559
1989	307	92,587	120,369	6,591,411	5,914,802	272,247,657	327,582,612	612,336,482
1990	257	203,301	129,314	9,865,112	3,245,803	205,016,481	476,952,557	695,079,953
1991	240	29,615	61,258	5,057,238	2,238,216	39,204,371	348,866,925	395,366,750
1992	40	965	13,969	97,224	1,087,218	1,390,093	21,484,448	24,058,983
1993	69	13,779	58,489	1,172,000	10,616,000	10,066,000	175,260,000	197,114,000
합계	3,503	1,233,949	1,381,817	71,111,002	68,522,574	1,482,048,235	2,945,354,245	4,567,036,056
연평균	250	88,139	98,701	5,079,357	4,894,470	105,860,588	210,382,446	326,216,861

주요 태풍피해 현황

(단위: 백만원)

태풍이름	내습연월일	피해지역	사망·실종	재산피해
사라	59.9.10~17	영·호남,영동	849	125,638
카멘	60.8.22~24	영남·제주,서해중부	159	5,638
노리	62.8.2~4	중부·호남,제주	52	1,591
오펠	62.8.7~9	중부,호남	123	913
설리	63.6.18~22	영·호남	107	31,547
헬렌	64.8.1~3	제주·호남,중부서해안	41	1,750
폴리	68.8.15~17	제주,영·호남	732	6,216
을가	70.7.3~7	남부·영동	84	50,681
빌리	70.8.30~31	제주,호남,서해지방	38	43,215
리타	72.7.25~26	영·호남,제주	54	6,479
폴리	78.6.19~20	영남	25	4,125
카멘	78.8.13-20	제주남쪽	34	35,748
어빙	79.8.16~17	제주,경북,호남	17	56,965
쥬디	79.8.24~25	제주,서해,동해안	136	83,111
애그니스	81.9.1~4	남해,동해안	136	97,054
세실	82.8.13~14	서해안지방	68	23,582
홀리	84.8.20~21	제주,전남,부산지방	6	2,084
키트	85.8.9~11	제주,전남,경북	12	1,850
브렌다	85.10.5~7	제주,영남,동해안	58	13,000
베라	86.8.26~29	영·호남 및 중부지방	34	37,231
셀마	87.7.15~16	영·호남 및 중부지방	335	219,500
쥬디	89.7.28~29	경남,남해안지방	16	99,127
클래디스	91.8.22~24	영남지방	103	259,859

80년 이후 재해모금 및 구호현황

(단위:천원)

구분 년도	모금및이자 수입액	구 호 비			
		주택 복구비	긴급및장기구호비	기 타	합 계
1980	9,454,603	2,227,180	1,230,308	1,266,222	4,723,710
1981	6,079,381	1,335,988	2,881,824	9,952	4,227,764
1982	1,269,872	353,066	1,616,235	250,579	2,219,880
1983	785,347	319,024	34,274		353,298
1984	17,127,739	957,410	16,253,105	30,806	17,241,321
1985	1,186,653	491,936	1,584,736	201,497	2,278,169
1986	349,213	634,528	2,189,866	200,545	3,024,939
1987	33,074,848	4,735,507	25,522,508	194,412	30,452,427
1988	1,823,642	479,872	1,752,967	102,556	2,335,395
1989	19,116,930	1,988,244	13,270,988	223,814	15,483,046
1990	45,558,203	2,149,809	30,858,882	814,704	33,823,395
1991	28,673,760	1,255,771	16,250,934	134,313	17,641,018
1992	4,369,916	46,400	2,543,811	200,000	2,790,211
1993	7,836,285	607,454	25,561,812	5,306,500	31,475,766
합 계	176,706,392	17,582,189	141,552,250	8,935,900	168,070,339

의연품 총 접수내역

(1961~1993)

품 명	단 위	단 가	총 수 량	환 가 액 (단위:천원)
의 류	점	5,000원	6,616,576	33,082,880
침 구 류	장	20,000원	138,461	2,769,220
양 곡 류	키로	1,200원	401,971	482,365
라 면	상자	5,000원	62,512	312,560
신 발 류	켈레	20,000원	99,614	1,992,280
식 기 류	점	3,000원	124,472	373,416
생 필 품	점	3,000원	830,696	2,492,088
약 품	점	3,000원	1,317,183	3,951,549
학 용 품	점	1,000원	1,854,390	1,854,390
건축자재	점	5,000원	749,392	3,746,690
버 너	대	15,000원	13,429	201,435
세 제 류	점	1,000원	83,460	83,460
식 품 류	점	1,000원	322,476	322,476
기 타	점	5,000원	1,794,166	8,970,830
합 계	점		14,408,798	60,635,639

'90년 수해의연금 모금현황

(단위:천원)

구 분 언론사	모 금 액	공 무 원 모 금	학 생 모 금	해 외 교 포 모 금	기 업 체 모 금	일 반 국 민 모 금
한국방송공사	5,794,604	695,353	231,784	57,946	3,129,086	1,680,435
문 화 방 송	4,356,225	261,373	304,936		2,308,799	1,481,117
조선일보사	9,868,735	789,499	493,437	29,606	6,878,508	1,677,685
한국일보사	4,293,691	386,432	257,621	128,810	2,790,899	729,929
서울신문사	1,466,618	1,243,692	2,933		87,997	131,996
동아일보사	1,549,710	61,988	92,983	30,994	1,084,797	278,948
중앙일보사	1,594,397	126,893	63,446	47,585	1,173,757	182,716
경향신문사	468,363	51,520	18,735	23,418	365,323	9,367
매일경제신문사	715,726	85,887	716	6,442	515,323	107,358
한국경제신문사	487,675	12,680	975	975	463,291	9,754
한겨레신문사	75,400	9,802	6,786		28,652	30,160
국민일보사	568,381	19,987	14,990	4,997	84,945	443,462
세계일보사	145,864	18,962	10,210		86,060	30,632
민주일보사	7,930	1,110	317	159	4,599	1,745
내외경제신문사	121,323	16,985	4,854	2,426	70,368	26,690
지방신문사	9,224,253	1,288,393	368,113	184,056	5,337,629	2,046,062
기 타	452,179	63,305	18,087	9,044	262,264	99,479
본 회	275,627					275,627
합 계	41,466,701 (100%)	5,133,861 (12%)	1,890,923 (5%)	526,458 (1%)	24,672,297 (60%)	9,243,162 (22%)

91년 수재의연금 모금현황

(단위:천원)

구 분 언론사	모 금 액	공 무 원 모 금	학 생 모 금	해 외 교 포 모 금	기 업 체 모 금	일 반 국 민 모 금
한국 방송공사	4,384,925	457,529	264,415	28	1,343,138	2,319,815
문 화 방 송	3,034,526	42,896	103,564		690,603	2,197,463
조 선 일 보 사	2,915,235	196,935	584,718	1,184	1,562,690	569,708
한국 일 보 사	5,491,183	307,677	608,669	12,571	3,903,635	658,631
서울 신 문 사	875,121	451,837	19,996		306,766	96,522
동 아 일 보 사	1,072,049	45,449	255,737	586	648,782	121,495
중 앙 일 보 사	844,062	76,005	26,295	3,773	566,441	171,548
경 향 신 문 사	593,146	24,637	21,158		505,299	42,052
매 일 경 제 신 문 사	313,735	5,394			194,181	114,160
한국 경 제 신 문 사	175,268	8,837			149,100	17,331
한 겨 레 신 문 사	226,561	8,574	518		203,025	14,444
국 민 일 보 사	485,400	10,080	6,305	2,113	221,273	245,629
세 계 일 보 사	289,676	10,752	7,779		256,109	15,036
내 외 경 제 신 문 사	33,245	3,358	2,493		20,446	6,948
지 방 신 문 사	4,337,372	438,075	325,303		2,667,484	906,510
기 타	423,650	42,789	31,774		260,544	88,543
본 회	61,513					61,513
합 계	25,556,667 (100%)	2,130,824 (8%)	2,258,724 (9%)	20,255	13,499,516 (53%)	7,647,348 (30%)

'93년 의연금 시도별 지원현황

(단위:천원)

구분 시도	장의위로금	장기구호	생계 보조	세입자 보조	침수주택 보조	무상양곡	주택 복구	미귀가세 대위로금	특 별 위로금	합 계
서울	12,000									12,000
부산	12,000	3,578			588,900	6,900	1,600	200	65,500	678,678
대구						15,042				15,042
인천	32,000									32,000
광주	8,000	1,503				21,390	1,920	200		33,013
대전		39				8,004	960	200		9,203
경기	12,000	22,520				176,682	1,280	200		212,682
강원	4,000	586,068			392,200	2,638,024	41,920	14,400		3,676,612
충북		35,787				312,708	6,400	1,200	21,000	377,095
충남	8,000	231,879				911,076	33,920	1,000		1,185,875
전북	1,152,000	132,751			218,700	793,770	66,560	18,600		2,382,381
전남	52,000	273,369	5,500	7,000	332,200	1,364,004	127,360	18,000		2,179,433
경북	16,000	814,101		300	336,300	7,434,204	167,092	77,400		8,845,397
경남	56,000	621,815		50	838,400	4,795,098	151,092	67,400		6,529,855
합계	1,364,000	2,723,410	5,500	7,350	2,706,700	18,476,902	600,104	198,800	86,500	26,169,266

최근5년간 재해 의연금 모집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년 도	1989	1990	1991	1992	1993
수 입	합 계		23,411,326	53,486,483	48,336,848	35,065,746	40,111,819
	전년도이월금		4,294,396	7,928,280	19,663,088	30,695,831	32,275,535
	모 급 수 입		18,609,867	41,466,701	25,556,667	30	10,200
	이 자 수 입		340,009	874,302	1,810,872	3,188,206	2,919,438
	집행잔액반환금		167,054	3,217,200	1,306,221	1,181,679	4,906,646
지	합 계		15,483,046	33,823,395	17,641,017	2,790,211	31,475,766
	장 의 위로금		768,060	618,000	576,000	20,000	1,364,000
	장 기 구호비		3,444,628	2,347,962	1,644,738	369,321	2,723,410
	생 계 보조비		57,500	26,750	22,000		5,500
	주 택 복구비		1,839,580	1,973,844	1,202,411	46,400	600,104
	세입주 보조비		148,664	175,965	53,360		7,350
	침수주택수리비		3,792,400	14,309,600	8,295,800	771,300	2,706,700
	농어가 특별 생 계 비		5,208,400	2,421,500			
	추석절미귀가 세 대 위로금			502,200	1,890,000		198,800
	이 재 민 특별 위 로 금			10,200,000			86,500
출	월 동 대책비				1,761,200		
	무 상 양 곡			432,870	2,061,196	1,383,190	18,476,902
	긴급생활품구입비			475,781	97,426	200,000	
	기 타		223,814	338,923	36,886		5,306,500
잔 액			7,928,280	19,663,088	30,695,831	32,275,535	8,636,053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요강

(중앙재해대책본부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풍수해대책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및 기타 방재 책임자 등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재해비용부담율과 부담액을 정함으로써, 재해복구사업을 원활히 실시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유족위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장의비 포함)을 지급 한다

제9조(이재민구호)

- ① 재해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근거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재민 구호를 실시한다.
 1. 가옥의 전파, 유실 또는 반파피해를 입는자
 2. 5톤 미만 선박의 전파, 유실 또는 반파 피해를 입은자
 3. 1헥타 미만 경작자로서 80% 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4. 어망, 수산증·양식시설 및 생물이 80%이상 피해를 입은자
 5. 축사, 초지, 양잠 등이 80%이상 피해를 입은자
 6. 본부회의에서 이재민 구호를 실시하기로 심의한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이재민 구호대상자 중 별표에서 정한 장기 구호기간(1~3개월) 종료 후에도 생계가 극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안에서 구호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구호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생계보조)

- ① 재해로 인하여 그 가구의 주수입원이었던 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그 유가족에게 생계보조를 할 수 있다.
- ② 재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영세농·어가로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최고 10가마 범위 안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무상양곡을 지원 할 수 있다.
 1. 1.5헥타 미만 경작자로서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
 2. 5톤 미만 선박, 소규모 수산증·양식 시설 및 5헥타미만 제3종 공동어업(어망)이 50%이상 피해를 입은 어가

제11조(주택복구)

- ①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 또는 유실되었거나 홍수 범람등으로 침수 되었을 경우에 건물주에게 복구비 또는 수리비를 지원하고 전과 건물의 월세 및 전세 입주자에게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실제 월세 및 전세 계약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건물주가 전과 및 반파 주택을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증금중 의연금만을 지원하며, 주택복구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보조금을 선 지급 할 수 있다.

'94년도 구호비 지원 기준

(중앙재해대책본부 제정)

구 분	종 별	단 위	지 원 액	재 원	
사망자및 실종자	위 로 금	구	4,000천원	의연금 100%	
장기생계 구호비	1~3개월	1인/1일	1,230원	국고 70% 의연금 30%	
생 계 보 조 비	1 급	세 대	3,000천원	국고50% 의연금50% 가구의 주수입원이었던 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그 유가족	
	2 급		2,500천원		
침 수 주 택 보 조 비	일부 침수	세 대	300천원	의연금100%	
	완전 침수	세 대	500천원	의연금100%	
주 택 복 구	전 파 주 택	15 평형	동	12,000천원	국고및 지방비(12%) 1,440,000
					의연금(8%) 960,000
	장기저리융자(70%) 8,400,000				
10 평형	동	8,000천원	국고및 지방비(12%) 960,000		
			의연금(8%) 640,000		
장기저리융자(70%) 5,600,000					
반 파 주 택	동	4,000천원	국고및 지방비(12%) 480,000		
			의연금(8%) 320,000		
장기저리융자(70%) 2,800,000					
자부담(10%) 400,000					
세입주보조비	월세및전세금	세 대	2,000천원범위 내 실제약금	국 고 50% 의연금 50%	
	아파트입주보조	세 대	입주보증금및 6개월 임대료	국고및 지방비 50% 의연금 50%	
무 상 양 곡 지	50~80%미만피해	세 대	양곡 5 가마	국 고 70% 의연금 30%	(1ha미만 경작농작물 피해농가 및 이와 유사한 재산 소유의 어망, 수산 증·양식시설 등 피해어가)
	80~100%피해	세 대	양곡10 가마		

재해구호 지침 요강

(보건사회부제정)

1. 목 표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와 피해시설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생활 안정도모

2. 방 침

가. 신속한 재해 구호 및 복구 지원

나. 재해구호 비축물자 등 관리철저

다. 방역 및 전염병 예방 철저

6.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배분

가. 의연금품의 모집

(1)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연금품을 모집 할 수 있다.

(2) 의연금품의 모집은 중앙 일원화의 원칙에 의하여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주관한다.

(3) 시·도지사는 각시·도, 시·군·구에 의연금품이 기탁될 때에는 즉시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나. 의연금품의 관리 및 배분

(1) 모집된 의연금품은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관리 배분한다.

(2) 의연금품을 배분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정도, 이재민 발생 상황에 따라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사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분한다.

다. 초과보유 의연금의 특별사용

(1) 보건사회부장관은 재해지역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의연금 관리 운영규정(보건사회부훈령 제628호)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연금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의연금 사용금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에 의거 그 초과 금액의 범위안에서 전국재해대책협의회장과 협의 이재민의 구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 할 수 있다.

(2) 특별 사용 기준

(가) 이재민에 대한 세대당 50만원 이내의 명절 특별 위로금

(나) 이재민에 대한 장기 구호시 세대당 1일 2,000원 이내의 연료비

(다) 주택이 파손된 가구에 대하여 전파의 경우에는 세대당 120만원이내, 반파의 경우에는 세대당 60만원이내의 주거비 보조

(라) 이재민에 대한 세대당 30만원 이내의 월동대책비

의연금 관리 운용 규정

(보건사회부훈령 제628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의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 및 관리·운용기관)의연금의 모집 및 관리·운용은 사단법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3조(의연금운용 계획)

- 1) 전국재해대책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전에 의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의연금 운용계획에는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등 기타 의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연금모집 결과보고) 협의회장은 의연금 모집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모금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연금사용)

- 1) 의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재해이재민의 긴급 구호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2. 풍수해 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3. 모금경비 및 협의회 운영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초과보유의연금의 특별사항)

-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재해지역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연금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의연금 사용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그 초과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장과 협의하여 이재민의 구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수 있다.
 1. 이재민에 대한 세대당 50만원이내의 명절 특별 위로금(설날, 추석, 성탄절 및 석가탄신일로서 재해발생후 처음 맞게 되는 날에 한 한다.)
 2. 이재민에 대한 장기 구호시 세대당 1일 2,000원 이내의 연료비
 3. 주택이 파손된 가구에 대하여 전파의 경우는 세대당 120만원 이내, 반파의 경우에는 세대당 60만원 이내의 주거비 보조
 4. 이재민에 대한 세대당 30만원이내의 월동대책비
- 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그 사용 금액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해기간중 사용한 의연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 할 수 없다.

지난30년간 장마분석

우리나라 장마시기와 기간을 분석해 발표한 기상청의 최근 자료를 분석해 본다. 지난61년 부터 90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의 장마를 분석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장마는 평균 6월20일경 시작해 29일간 계속되다 7월 중순에 끝나고 남부 지역은 6월23일경 시작해 31일간 계속되다 7월23일경에 끝난다는 것이다. 또 중부 지역의 경우는 이보다 며칠 늦은 6월26일경 시작해 30일간 지속되다 7월25일경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경우 가장 빨리 장마가 시작됐던 해는 71년6월8일이었고 가장 늦었던 해는 82년7월5일 이었다.

장마가 가장 빨리 끝난 해는 64년6월30일인 반면 가장 늦게 끝난 해는 74년의 7월30일이었다. 또 장마 기간이 가장 짧았던 해는 64년으로 7일에 불과했으나 71년에는 46일간이나 지속돼 가장 길었다. 남부지역의 경우 장마가 가장 빨리 시작되었던 해와 늦었던 해는 71년의 6월10일과 82년의7월7일 이었고 가장 빨리 끝났던 해와 늦게 끝났던 해는 72년의 7월12일과 87년의8월8일 이었다.

한편 72년의 장마는 불과 7일 만에 끝난 반면 79년의 장마는 무려 51일간 계속되기도 했다. 중부 지역의 경우 가장 빠른 시작일과 가장 늦은 시작일은 86년의 6월15일과 62년의 7월9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빠른 종료일과 가장 늦은 종료일은 각각 72년의 7월11일과 87년의 8월10일인 것으로 밝혀 졌다.

또 이지역 장마의 최단 기간과 최장 기간은 62년의15일과 79년의50일 이었다. 91년의 장마는 제주지역이 예년과 동일한 6월20일 시작되었고 남부 지역이 예년보다 이틀 늦은 6월25일, 중부지역이 3일 늦은 6월29일 시작되어 7월 하순에 끝났다. 92년의 장마는 제주지역이 예년 보다 3일 늦은 6월23일 시작됐고 남부 지역이 예년에 비해 14일 늦은 7월9일에 중부 지역이 남부지역보다 빠른 7월3일 시작되어 8월 초순에 끝났다.

93년의 장마는 제주지역이 예년과 비슷하게 6월22일 시작됐고 남부 지역이 6월23일 중부지역이 6월26일 시작되어 7월 하순에 끝났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란 기상학적으로는 무더운 북태평양고기압과 한랭 다습한 오호츠크해 고기압 세력의 경계면이 우리나라의 부근에 동서로 자리 잡고 있을 때를 말한다. 겨우내 멀리 하와이 방면에 물러나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은 세력을 확장하여 6월 말경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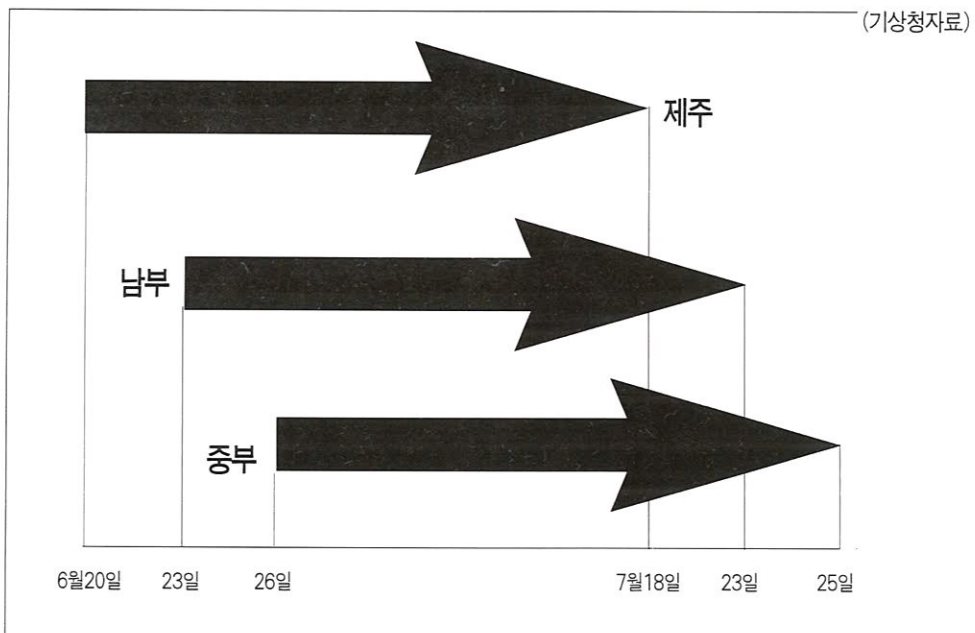
또 겨울 동안 얼음으로 덮혀져 있던 오호츠크해는 봄이 되면 녹으면서 시베리아 대륙으로부터 흘러 들어 온 눈 녹은 물의 영향으로 대륙에 비해 섭씨 10도 정도 낮은 찬 공기가 머물게돼 오호츠크 고기압을 형성한다.

이 두 고기압은 온도차가 크기때문에 그 사이에 뚜렷한 전선이 생긴다.

이때 서쪽으로 뻗어 나온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부터 불어 올라오는 상승의 북서기류 사이에도 수렴대가 생긴다. 이 전선과 수렴대는 이동하지 않고 머무는 성질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전선을 따라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가기 때문에 6월말 부터 8월초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영향권 아래 놓인다.

이 전선과 수렴대는 장마를 몰고 오기 때문에 장마전선이라고 불린다. 장마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확장이 비교적 약한 6월 중순경에는 일본남쪽해상에 머물러 있으나 점차 세력이 강해 지면서 북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해 6월 하순에는 일본 열도, 7월 중순에는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 북상하게 된다. 이 무렵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장마전선활동도 점차 약화돼 조금씩 북쪽으로 올라 간다. 7월 하순 경에는 장마전선이 만주 국경까지 올라가서 소멸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장마는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날씨 즉 무더위가 시작된다.

- 61~93년 장마기간 분석 -



태풍과 집중호우

태풍의 발생과 종류

태풍은 북반구의 북동무역풍과 남반구의 남서계절풍이 해수온도 섭씨 26도이상의 적도 부근인 북위 5~20도, 동경 1백10~1백80도에서 부딪혀 발생하는 약한 열대성 저기압이 모체다.

열대성저기압이 해상의 수증기를 빨아 들이면서 에너지를 축적, 중심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17m이상이고 폭풍우를 동반하면 비로소 태풍으로 인정받는다.

이때 지구자전으로 인해 태풍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기는 시계반대방향으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반경 2백~5백Km에 영향을 미친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80개 정도가 발생하는 태풍은 발생해역별로 태풍(북태평양 남서해상),허리케인(북대서양 카리브해), 사이클론(인도양), 윌리윌리(호주부근)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이 중에서 태풍은 매년 30개 정도가 발생해 3개 안팎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준다.

태풍은 최대풍속과 중심기압에 따라 특A급(초속65m이상, 9백20헥토파스칼(hpa)이하) A급(초속 50~65m,920~950hpa), B급(초속30~50m, 950~980hpa), C급(초속17-30m,9백80hpa이상)등 네가지로 나눈다.

태풍의진로와 이름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처음에는 발생지에서 적도부근의 동풍에 밀려 북서진하던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한 6월과11월에는 대만 아래를 거쳐 중국 대륙쪽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한 7월~10월에는 북위 25~30도까지 북상 한뒤 포물선 형태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연변을 따라 북동쪽으로 진로를 바꾼다. 태풍은 편의상 발생 순서에 따라 번호와 이름을 붙인다. 번호는 매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일본 기상청에서 (1호)부터 지정해 시작하며, 이름은 연도에 관계없이 괌에 위치한 美 태풍 합동경보센터에서 알파벳 순에 따라 1개조 21개씩 모두 84개의 남녀 이름을 교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름은 발생하는 태풍 모두에게 지정되는데 반해 번호는 일본 기상청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붙여진다.

태풍의 위력

태풍은 A급일 경우 히로시마투하 원자폭탄 2만개의 위력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c급이라도 20메가톤급 수소폭탄 4백개와 맞먹는다. 이 거대한 에너지의 90%는 태풍자체의 기류를 상승시키고 이동하는데 소모되기 때문에 실상 지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머지 10%에 불과하지만 그 재해는 엄청나다.

태풍은 진행방향의 오른쪽 반원의 풍속이 왼쪽보다 훨씬 강하다.

태풍의 예보와 대책

기상청에서는 태풍이 북위 25도 이상으로 올라와 우리나라가 영향권에 들어갈 경우 태풍주의보(최대풍속이 초속14m이상이고 폭풍, 호우, 해일 등으로 기상 재해가 우려될때), 태풍경보(초속21m이상이고 막대한 기상재해가 우려될때) 등의 태풍 특보를 발표한다. 기상청은 최근들어 기상위성, 기상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수치, 통계예보 기법을 이용하면서 태풍예보가 상당히 정확해 졌다고 전한다.

그러나 아직도 24시간 예보의 평균 오차범위가 1백90Km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집중호우

집중호우란 태풍이나 장마전선 또는 저기압대가 형성되고 지역에 따라 기압의 골짜기가 생기면 여기서 습한공기가 상승기류에 의해 빗방울로 바뀌어 1시간에 30mm이상 쏟아져 내리는 비를 말한다.

따라서 좁은 지역에 내리는 집중호우는 마치 동이물을 퍼붓는 것과 흡사하다. 때문에 산사태도 생기고 도로와 제방이 무너지기 일쑤다. 특히, 가랑비나 보통비가 온 뒤에 천둥이 많이 치든지 두터운 구름이 몰려와 어두워지면 집중호우가 내릴 위험이 높다.

아무튼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하늘의 조화인 구름과 바람과 기압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아직은 역부족이라 하겠다.

재해복구사업 및 의연금 모금

1. 응급복구

재해가 발생되면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응급복구가 행해진다.

2. 항구복구

피해를 입은 시설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항구복구 공사가 시행되며 원상복구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양할 수 없는 지구는 추가사업비를 들여 유사한 피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3. 재해구호 및 복구 기준

재해구호 및 복구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재해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이 기준은 불의에 큰 피해를 당하여 많은 비용이 요구 되는 사람들과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기준의 가장 큰 의의는 재해로 파괴된 공공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고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신속히 구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과 지방 또 관련기관과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개개인이나 지역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재정지원하는 것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그리 드문 일은 아니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일정한 수준에 한정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해복구는 중앙정부에 항구적인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게 되고 지방정부나 개개인의 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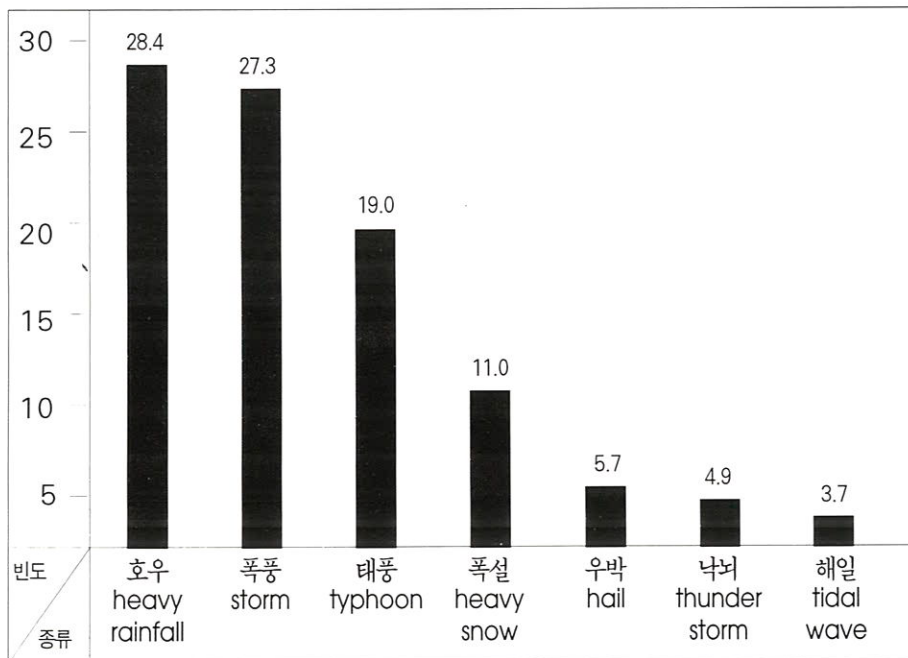
4.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재해가 발생 되었을때 해당 시,군에서 피해액을 1차적으로 산정하여 그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각 지방에서 책임을 지고 복구하며 피해가 큰 경우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일반 시군의 경우 시,군당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 지원 대상이 되며, 직할시의 구나 인구 30만명 이상 시의 경우는 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5. 대규모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국의 신문사 방송사를 통하여 범국민적인 재해의연금품 모집활동을 전개하며 사용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정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이재민 구호금으로 사용된다.

주요기상재해 발생 구성비(1904~1991)
(자료:중앙재해대책본부)



우리나라 주요 기상기록

기 상 상 황		기 상 값	장 소	기 간	비 고
강	1시간최다	118.6mm	서 울	42년8월5일	태풍 아그네스 영향
	1일최다	547.4mm	전남장흥	81년9월2일	
	2일연속	630.9mm	전남장흥	81년9월2-3일	
	3일연속	659.7mm	전남해남	81년9월 1- 3일	
	월최다	1.354mm	서 울	40년7월	
수	연최다	2.416mm	강 릉	54년	
	연최소	428mm	장 기 곳	14년	
	강우계속일수	38일	부 산	47년7월3일- 8월9일	
	무강우계속일수	84일	대 구	64년11월6일- 65년1월28일	
	1일최대적설량	293mm	울 릉 도	62년1월31일	
기 온	1일최고기온	섭씨40도	대 구	42년8월1일	
	1일최저기온	섭씨영하32.6도	경기양평	81년1월5일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1-1

TEL : (715) 4139 · 6461

FAX : (715) 4429